

【 주간이슈 】

캐나다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논의

선임연구위원 이태열

부연구위원 최형선

□ 캐나다의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와 관련해서 최근 금융권 간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○ 주장 1: 보험회사에게 간접참여자 자격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한 캐나다 사례는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현재 상황과 유사함.

○ 주장 2: 캐나다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간접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.

□ <주장 1 관련>: 캐나다는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간접 참여하고 거치연금과 같은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하여 이체, 출금, 입금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.

○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의 지급계좌가 없으며, 보험료 수납 등을 은행의 지급결제기능에 의존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이는 캐나다 상황과는 명백히 다른 것임.

□ <주장 2 관련>: 캐나다 보험회사가 직접참여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보험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때문인데 이는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임.

○ 우리나라 지급서비스는 고유자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전액 은행에 예탁한 예치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캐나다에서 지적한 보험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문제는 없음.

○ 당초 보험산업은 캐나다의 집단청산자(group clearer)와 같은 대표금융기관을 경유하는 간접 참여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일부 금융권의 반대로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임.

□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는 그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본고는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무관한 작성자 개인의 의견입니다.

1. 서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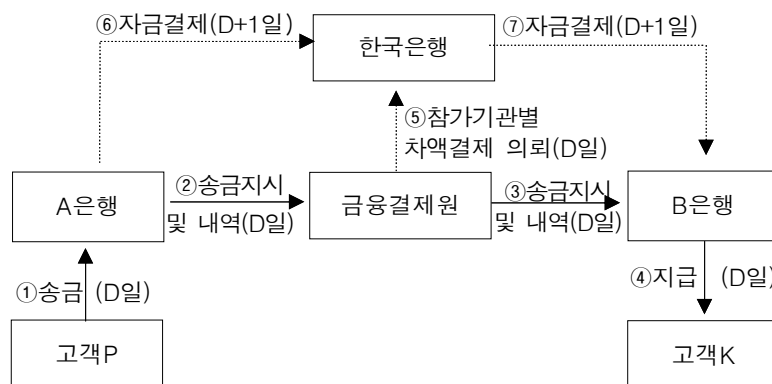
-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(2008. 11. 3)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에 기허용된 범위로 보험회사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함.
 - 보험회사가 금융결제원 소액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여 청산을 하게 되고, 대행은행을 통해 중앙은행과 지정시간 차액 정산방식으로 간접 참여하여 결제를 하게 됨.
 - 지급결제리스크 제거를 위해 지급결제용 자산을 계정 분리하여 은행에 전액 외부 위탁하도록 함.
- 최근 은행권은 캐나다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허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,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.
 - 첫째, 캐나다 보험회사가 간접참여자로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은행을 통해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등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함.
 - 둘째, 캐나다 보험회사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여자가 될 수 없다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함.
 - 은행권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를 위해 해외사례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-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비교를 통해 두 시스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은행권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.
 - 우선 우리나라와 캐나다 지급결제시스템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차이점이 은행과 보험을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참여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함.
 -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은행권의 비판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.

2. 우리나라와 캐나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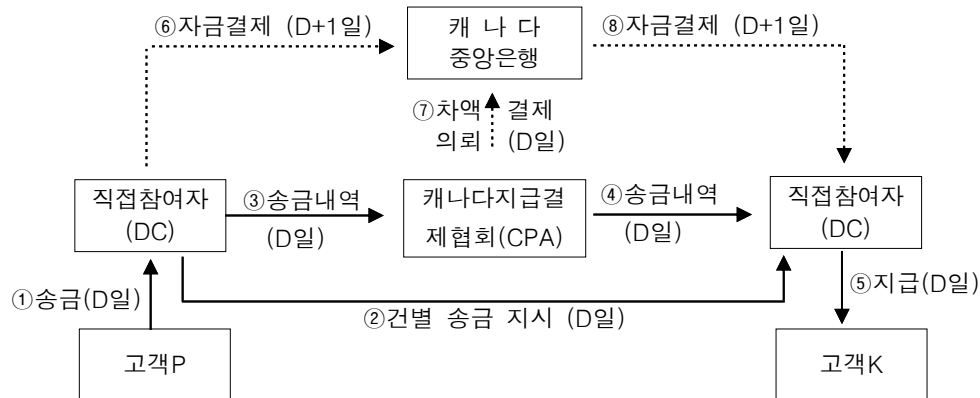
가. 직접 참여방식 비교

- 은행과 같은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지급지시를 교환하지만, 캐나다는 지급지시를 은행 간 직접 교환한다는 사실임.
- 은행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경우 모두 중앙은행 및 청산기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다는 점이 공통적임.
 - 청산업무의 경우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과, 캐나다는 지급결제협회(CPA)와 은행들이 상호 직접 연결되어 처리하고, 결제업무는 양 국가 모두 중앙은행과 은행 간에 직접 처리함.
- 지급지시의 경우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을 통하지만, 캐나다는 지급결제협회를 통하지 않고 은행 간 직접 교환하는 체제임. (<그림 1>, <그림 2> 참조)
 -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은 청산업무 및 지급지시를 모두 수행하지만,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청산업무만을 수행함.
 -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산 및 지급지시처리가 캐나다보다 중앙 집중적이라고 할 수 있음.
- 우리나라의 경우 결제업무는 은행을 통해서 간접 수행하고 지급지시와 청산업무는 청산기구와 직접 연결하여 처리하여도 무리가 없음.
 - 캐나다의 경우는 지급결제협회에 연결되어도 지급지시의 교환을 수행할 수가 없음.

<그림 1> 우리나라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여방식



<그림 2> 캐나다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여방식



<표 1>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구조

	우리나라	캐나다
지급지시	은행 → 금결원 → 타은행	은행 → 타은행
청산	은행 → 금결원	은행 → 지급결제협회(CPA)
결제	은행 → 중앙은행	은행 → 중앙은행

나. 간접 참여방식 비교

□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와 캐나다 모두 간접 참여방식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유형에도 다소 차이가 있음.

- 캐나다의 경우 청산기구와 중앙은행에 모두 직접 연결하는 직접참여자(DC: Direct Clearer)방식과, 은행과 같은 직접참여자 또는 별도의 집단참여자(GC: Group Clearer)를 경유하는 간접참여자(IC: Indirect Clearer) 방식의 두 가지 유형만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다름.
 - 12개 직접참여자 중 10개가 은행, 2 기관은 집단참여자임.
 - 집단참여자는 우리나라의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같은 대표금융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,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앙은행과 청산기구에 직접 연결되어 결제 및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은행과 지급지시를 직접 교환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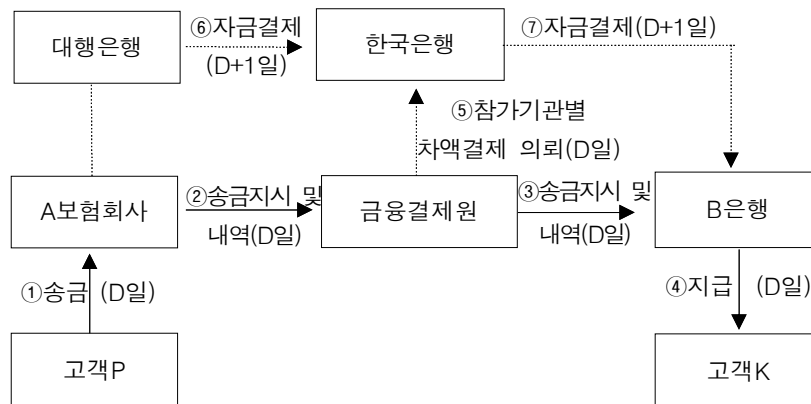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들의 대표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지만 중앙은행과의 결제는 대행은행을 통해서 간접 수행하여야 함.
- 우리나라의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은행금융기관들의 대표금융기관은 청산기구인 금융결제원에는 직접 연결하고 중앙은행과는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음.
 -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결제원 통해서 지급지시의 교환과 청산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관련 업무를 위해 은행을 경유할 필요가 없음.
 - 금융투자회사, 상호저축은행중앙회, 신탁중앙회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.
 - 반면, 결제업무는 대행은행을 경유해서 하는 간접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음.

다. 보험산업 참여방식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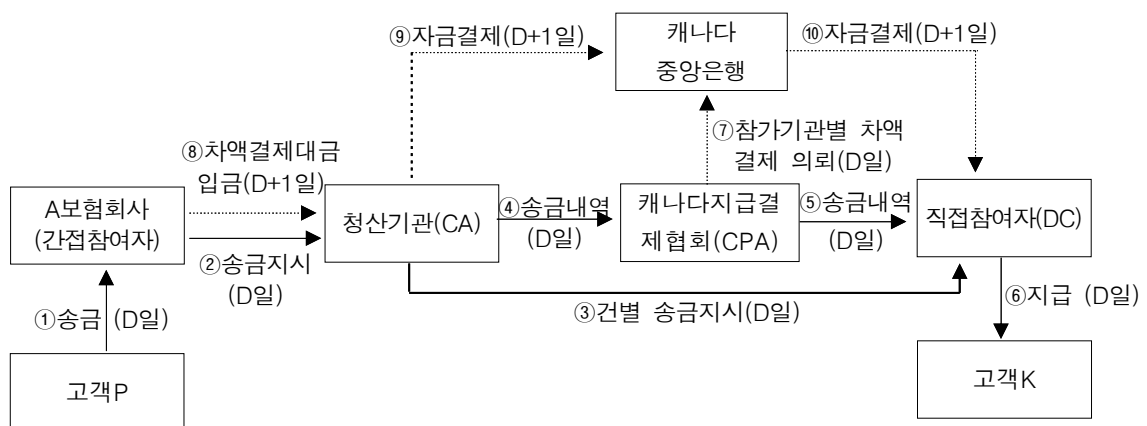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상품이 아닌 예탁금계좌를 기반으로 간접 결제, 직접 청산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나, 캐나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간접 결제, 간접 청산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.
 - 캐나다의 보험회사는 MMMF 등과 함께 간접참여자의 자격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, 청산, 지급지시를 모두 간접 참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.
 - 캐나다는 보험리스크가 지급결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보험회사에 대해 간접참여자 자격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.
 - 이는 캐나다 보험회사가 거치연금과 같은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.
 - 캐나다는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이체, 출금, 입금 등 은행이 수행하는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대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 -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결제는 간접 참여하고 지급지시와 청산은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음.
 - 우리나라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금융결제원에 집중되어 있어 은행을 경유할 필요가 없으며, 따라서 결제리스크와 직결된 결제업무만 대행은행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함.

- 지급계좌의 경우도 보험리스크를 완전히 분리하고 은행에 전액 예탁한 계약자 예치금을 활용하는 만큼 캐나다에서 간접 참여의 이유로 제시한 보험리스크의 전이문제는 발생하지 않음.
-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예탁금계좌를 기반으로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이체, 출금, 입금 등 지급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함.

<그림 3> 우리나라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



<그림 4> 캐나다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



<표 2> 우리나라와 캐나다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 비교

	우리나라	캐나다
지급계좌	은행에 전액예탁과 계약자예탁금	거치연금(보험상품)
서비스	이체, 출금, 입금 등 지급서비스	좌동
지급지시	보험회사 → 금결원 → 타은행	보험회사 → 청산기관(CA) → 타은행
청산	보험회사 → 금결원	보험회사 → 청산기관(CA) → 지급결제협회
결제	보험회사 → 대행은행 → 중앙은행	보험회사 → 청산기관(CA) → 중앙은행

주: 청산기관(CA: Clearing Agency)은 대표금융기관과 같은 집단참여자(GC)가 될 수도 있으며 은행과 같은 직접참여자(DC)도 될 수 있음.

3. 캐나다 사례와 관련한 논의(Q&A)

□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캐나다 사례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.

① 캐나다 보험회사는 은행과 같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되었는가?

- 캐나다의 보험회사들은 2001년 지급결제법의 개정에 따라 거치연금을 기반으로 이체, 송금, 입금 등 은행이 예금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.
- 직접 참여의 허용문제는 결제, 청산, 지급지시의 처리를 경유해서 처리하느냐 직접 처리하느냐의 문제이지 지급서비스의 종류와 관련한 문제가 아님.

② 캐나다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은?

- 캐나다의 경우 결제, 청산, 지급지시를 모두 직접 처리하는 직접청산자가 되거나 모두 간접 처리하는 간접청산자가 되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으며,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간접참여자 자격이 부여되어 있음.
- 따라서 캐나다 보험회사들은 은행과 같은 직접참여자로서 통해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거나,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같은 대표금융기관 성격의 집단참여자를 두고 이를 통해 참여하여야 함.

- 캐나다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 내에서 은행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 참여자가 2개 기관(Credit Union Central of Canada와 La caisse Centrale Desjardins du Québec) 있음.

o 당초 보험산업은 캐나다의 집단청산자와 같은 대표금융기관을 경유하는 간접 참여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은행권의 반대로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음.

③ 캐나다 보험회사의 간접 참여방식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와 동일한 것인가?

o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의존하고 있고, 지급계좌도 없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.

o 하지만, 캐나다 보험회사는 지급계좌를 가지고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간접 참여하여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.

o 또한 캐나다의 간접참여자가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와 동일한 상태라면 지급결제협회에 굳이 간접참여자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없음.

④ 캐나다 보험회사가 결제, 청산, 지급지시를 간접방식으로 참여하는 이유는?

o 캐나다에서는 보험리스크의 전이가능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의 허용방식이 거치연금과 같은 보험상품에 지급서비스기능을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.

o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리스크의 전이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예치금을 기반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만큼 캐나다에서 제기한 이유는 유효하지 않음.

4. 결 론

□ 캐나다에서 보험회사에 허용된 간접참여 방식과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상황은 명백히 다른 것임.

o 캐나다 보험회사들은 2001년 지급결제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상품인 거치연금을 지급계좌로 하여 이체, 출금, 입금 등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
-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제휴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의존하고 있고, 고객을 위한 지급계좌도 없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님.
-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 제공이 허용된 캐나다의 경우 보험리스크의 전이 문제 때문에 직접참여가 불허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제거한 유형으로 참여하고자 하고 있음.
 - 캐나다 보험회사들은 은행과 같은 직접참여자를 경유해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거나,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같은 대표금융기관 성격의 집단참여자를 두고 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음.
 - 직접 참여를 불허하는 이유로 보험리스크의 전이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의 허용방식이 거치연금과 같은 보험상품에 지급서비스기능을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.
 -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보험리스크의 전이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예치금을 기반으로 참여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거론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.
- 따라서 캐나다의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와 관련해서 은행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그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KiRi.